

13. 都市計劃施設基準에 關한 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86號 1996. 12. 26

주요 골자

- 가.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스포츠 위주의 유원지, 해변·호수 등에 설치하는 유원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달리 하던 것을 유원지의 설치기준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유원지의 설치기준 운영상 혼란을 방지함(제48조 제1항 제4호).
- 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주한외교관을 위한 공관으로 한정되었던 공용의 청사에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 교정시설을 포함시킴(제82조).
- 다. 현재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 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에게도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26조).
- 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산업단지조성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제127조 제7호).

개정 이유

기능별로 구분하던 유원지의 설치기준을 통합하고, 공용의 청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 제목중 “심신장애인등”을 “장애인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심신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14조중 “한국공업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제15조의 2 제2항 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 2 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와”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과”로 한다.

제21조의 4 제1항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동규칙 제86조”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자동차검사시설”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로 한다.

제48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유희시설(어린이이용 위주 및 가족이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 어린이열차·어린이전차·어린이자동차·어린이비행기·무한궤도차·회전보트·회전목마·요술집·전자오락실·그네·미끄

럼틀·시소 등의 시설 기타 기계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 나. 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탁구장·활터·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 등 각종 운동시설

- 다.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 야영장을 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

- 라.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온실·수족관·공연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예식장·경마장

- 마. 편의 및 관리시설 : 도로·주차장·삭도·관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사진관·쓰레기처리장·약국·간이의료시설·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및 금융업소와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위락시설(카지노업소를 제외한다)

-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시설

제4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 2(제주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중 유원지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는 제47조 제9호 및 제4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제7호 중 “근린상업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공용의 청사) 이 규칙에서 “공용의 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빌려주는 주한외교관을 위한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수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제85조 제1항 제9호 및 동항 제10호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91조의 2 본문 중 “문화공보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의 2 및 제1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5조의 2(장례식장) 이 규칙에서 “장례식장”이라 함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영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126조(폐기물처리시설) 이 규칙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정보를 받은 자
2.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설치하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설치하는 적출물처리시설(소각·재생처리 시설에 한한다)

제127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적출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에도 결정할 수 있다.

가. 폐기물처리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의 압축시설 또는 동호 라목의 파쇄·분쇄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7.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매립의 방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

지인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8조의 2 중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1조의 2(폐차장) 이 규칙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132조 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원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유원지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